

<h2 style="margin: 0;">등 록 신 청 서</h2>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엽제후유증2세환자	처리기간 90 일
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-	③주 소		(☎ )	
④입대일		⑤계 급		⑥군 별		⑦군 번	
⑧질병명	1.		2.		3.		
월 남 전 참 전 복 무 기 록							
⑨참전부대(중대까지)	⑩참 전 기 간	⑪참 전 지 구	⑫참 전 시 직 책				
유 족 및 가 족 사 항(신청인을 포함한다)							
⑬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과의관계	⑭성 명	⑮주 민 등 록 번 호	⑯학 력	⑰직 업	⑱월소득(천원)		
		-					
		-					
		-					
		-					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							
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							
신청인 :						(서명 또는 인)	
지방보훈청장						(인)	
보훈지청장							
구 비 서 류	1.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포함) 또는 병적증명서(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하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 1통 2.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(법제5조제1항, 제2항, 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) 1통 3. 사망진단서·진료기록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(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등록신청자에 한한다) 1통						

수 수 료
없 음

<기타서류>

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·등록된 자중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,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결정·등록된 자중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,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·등록된 자는 각각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호적등본 1통
2. 주민등록표등본(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호적등본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) 1통
3. 사진(3센티미터 × 4센티미터) 1매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		처 리 기 관				
		관할지방청 또는 보훈지청	각 군 본 부	보훈병원	보훈심사위원회	
처 리 과 정	신청서	접 수 <small>(알남전참전 확인의뢰)</small> <small>(참전사실 통보)</small>	사실확인	검 진	*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만 해당 심의·의결	
	(통 지)	검진의뢰서 작성	(검진의뢰)			
		결정·등록	(검진결과통보) (심의의뢰) (심의결과통보)			
접 수	일 자	번 호	결 재	담 당	과 장	(지) 청 장